

제2014호

고양시보

2023년 10월 10일(화)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고 시

고양시 덕양구 고시 제2023-27호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3-350호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3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477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8
-----------------------	------------------------------	---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지적도근점 5924, 5927, 5928, 5929, 5930, 5932, 5934, 5935, 5938, 5941, 5942, 151(12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좌표계 원점(동경 127° 북위 38°)
3. 좌표 및 설치일 : [붙임]과 같음
4. 표지의 재질 : 철재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6. 연락처 :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8075-5170)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현황

연번	명칭	번호	원점	세계좌표		지역좌표		폐기일	소재지	비고
				X (m)	Y (m)	X (m)	Y (m)			
1	지적 도근점	5924	중부	562081.27	190628.60	461775.31	190558.27	2023.10.10.	삼송동	망실
2	지적 도근점	5927	중부	561923.09	190627.63	461617.13	190557.30	2023.10.10.	삼송동	망실
3	지적 도근점	5928	중부	561857.18	190648.69	461551.22	190578.36	2023.10.10.	삼송동	망실
4	지적 도근점	5929	중부	561806.96	190661.42	461501.00	190591.09	2023.10.10.	삼송동	망실
5	지적 도근점	5930	중부	561784.47	190682.87	461478.51	190612.54	2023.10.10.	삼송동	망실
6	지적 도근점	5932	중부	561770.87	190801.91	461464.91	190731.58	2023.10.10.	삼송동	망실
7	지적 도근점	5934	중부	561687.41	190764.07	461381.46	190693.74	2023.10.10.	삼송동	망실
8	지적 도근점	5935	중부	561735.21	190725.25	461429.25	190654.93	2023.10.10.	삼송동	망실
9	지적 도근점	5938	중부	561568.14	190681.71	461262.18	190611.38	2023.10.10.	삼송동	망실
10	지적 도근점	5941	중부	561599.67	190831.06	461293.71	190760.73	2023.10.10.	삼송동	망실
11	지적 도근점	5942	중부	561615.66	190857.82	461309.70	190787.50	2023.10.10.	삼송동	망실
12	지적 도근점	151	중부	561519.68	190562.58	461214.12	190492.51	2023.10.10.	삼송동	망실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명 :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덕양구 내유동 산108 등 4개소(13필지) (붙임 참조)
4. 고 시 일 : 2023. 10. 1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가.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031-8075-4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23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연번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주 소	성 명	
								전남 장성군 장성면 금천리	한*복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한*수	
								전남 부안군 동진면 궁월리	한*수	
								전북 남원군 김해면 화정리	한*술	
								양평군 양평면 회현리	한*남	
								여주군 금산면 도곡리	한*교	
								서울 성북구 산선동	한*명	
								화성군 반월면 이리	한*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덕리	한*석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한*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한*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소*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소*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소*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소*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소*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김*금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방*태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북로	방*태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방*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방*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한*분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서편길	한*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한*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한*옥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한*숙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한*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	한*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한*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한*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한*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한*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한*희	

연번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주 소	성 명	
2023-1호	덕양구	내유동	산108	73,230	1,802	토석류	대피체계구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한*수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진*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울로	김*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한*한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영산로	한*희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한*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	윤*영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대명대길	윤*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박*예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심*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방*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한*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동로	한*수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한*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한*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한*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한*숙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조*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김*석	
								인천광역시 동구 여촌로	김*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청로	한*석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	한*석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	성*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한*나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한*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조*숙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정*숙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한*석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한*현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한*석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한*옥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한*탁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임*진	
								전라북도 남원시 울치길	김*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김*미	

연번			지번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역 유형	사업종류	소 유 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주 소	성 명	
	덕양구	내유동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김*미 박*우 조*영 이*강	
			109-9	34,144	1,543	토석류	대피체계구축			
2023-3호	덕양구	대자동	산1-1	260,080	90	토석류	계류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서*배 서*배 서*배 서*배	
			740-6	164	39					
			740-5	535	74					
			740-4	276	151					
			산1-40	26,190	189					
			산1-39	20,787	792					
2023-6호	덕양구	벽제동	635-1	17,255	366	토석류	대피체계구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이*식	
			635-6	11,502	1,605					
2023-8호	덕양구	지축동	산37-1	70,590	563	토석류	계류보전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로	박*원 이*연 이*훈 김*수	
			산22-5	33,603	497					
			150-1	57,080	1,065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 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 1. 8.>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10. 10.

고양시장

1. 모집인원: 12명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단 해당분야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함.

2. 임 기: 2년 이내로 하되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및 건립 관련 기술자문 종료 시까지

3. 신청자격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공공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임직원
- 도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설계·구조), 교통(교통영향평가), 환경(환경영향평가, 폐기물 자원화, 탄소중립 등), 환경시민단체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분야에 연구원·대학 교수 및 전문지식이 있는 자

4. 주요활동

- 고양시 폐기물처리계획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자문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 정책의 기본방향 자문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등 시행에 관한 자문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증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자문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입지 활용 도시계획·건축 등 주변 복합인프라 구축에 관한 자문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입지의 적정성 및 환경·교통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5. 접수 일정 및 방법

- 공고(접수)기간: 2023. 10. 10.(화) ~ 10. 24.(화) (2주간)
- 제출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활용·제공동의서 각 1부
- 방문: 고양시청 자원순환과(제1별관 2층)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미접수**
- 우편: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건우프라자 2층 자원순환과 / **10. 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또는 e-메일: fax)031-8075-4926, wltmr@korea.kr / **‘서명 또는 인’ 란 반드시 기재**

6. 선정방법

- 고양시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이 선정 위촉
- 선정결과는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결격사유 및 성별 균형 의무 이행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고양시폐기물처리시설기술위원회 위촉이 제한됩니다.
 - ▶ 피성년후견인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미성년자에 대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고양시 각종 위원회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9. 기타사항

- 신청서류를 우편·팩스·e-메일로 발송하는 경우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예정인원 이하이거나 선정자가 없을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자체 위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031-8075-2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①지원동기, 포부 및 참여 계획	※ 별지 사용 가능
②고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 자문위원회 위원 활동을 위한 제안 및 시정 발전에 바라는 점	※ 별지 사용 가능
③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학위, 연구실적, 국가기술 자격증 필히 기재 (자격증의 경우, 사본 제출)	※ 별지 사용 가능

※ 소개서 작성은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응모동기, 포부 및 참여계획, 시정제안 등 가능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식 3]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cm×4cm)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기 간	경 력 사 항		직 위	담당업무
기 간	학 력 사 항		전 공	비 고
년 월 일	연구 실적 (논문제목, 저술제목)	게재지/출판사	주요내용	
자원봉사 실적 (최근 5년)	시간			
년 월 일	자 격 증 명	발 급 기 관		
년 월 일	포상 및 각종위원회 참여현황			비 고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 청 자 (인)

고 양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등에 이용

□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인적사항/연락처/주소/기타 등 기본적 개인정보 기재 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신청서 접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표기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원조회 관련 관공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원조회 불가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자문위원회 위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표기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